#### ● 제289회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2019, 9, 4,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혜런 의원 외 13명발의 】

의안번호 895

## I. 조례안 개요

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혜련 의원 외 13명

나. 제 안 일 : 2019. 8. 7.

다. 회 부 일 : 2019. 8. 13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 복지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## 나. 주요내용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(안 제6조의1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○ 개정안은 '17.12.19. 「장애인복지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상충 방지를 위하여 제안 되었음.

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(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'17.12.19.개정,/시행 '19.7.1.)

- 용어정리
  - '장애등급'→'장애정도'
  - 장애'1~3급'→'심한장애', 장애'4~6급'→'심하지 않은 장애', 장애'1~6급'→'등록장애인'
-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
  - '장애등급별 차등 지원'→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'에 따라 지원

## 2 주요사항 검토

### 가. 개정안의 내용

○ 현행 조례상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'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'에서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으로 개정(안 제6조제1항) 하는 내용임.

혀	
줘	ਰ੍ਹੋ
Ч	U,

제6조(사업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있으며,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## [별표] <개정 2015. 11. 13.>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 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	독립유공자·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	북한 이탈주민
1	장애등급 1~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 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등급 3~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 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 상자	미과세대 상자
3	장애등급 5.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

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#### 개 정 안

제6조(사업의 의무)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
애인은
받아야 한다.

#### [별표]

####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	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	북한 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 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 조의 한부모가족 의 또 또는 부 중 국민기출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 상자	미과세대 상자

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### 나.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

- 현재 조례 제2조(적용의 범위)¹)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총 물량은 533개소로,
- 매점은 총 물량 124개 중 장애인이 48개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,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**없음**.
- 자동판매기는 총 409개소 중 장애인이 131개소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,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임.

<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>

(단위: 개소, '19. 5월말 기준)

총계		장애인		장0	H인	노인	한부모	기타	
구분	동계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<u> 고</u> 인	인구조	714	
	533	179	63	112	4	327	22	5	
매점	124	48	14	32	2(3급1, 4급1)	64	10	2	
자동 판매기	409	131	49	80(6)*	2(3급2)	263	12	3	

\*( ):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개소수

출처: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

<sup>1) 「</sup>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적용의 범위 등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sup>1.</sup>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
<sup>2.</sup>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<sup>3.</sup> 시가 <u>「지방공기업법」</u>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, 공사 및 공단(이하 "시 산하 공기업"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,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매점 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 $10^{m^2}$ 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.

## 다.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○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(장애인복지정책과)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 동의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.

## 3 종합 검토 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장애
 2급 이상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변경,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의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## 참고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개요 (보건복지부)

## □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배경

- **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**하여,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**서비스제공기준** 마련
- 장애등록 후 각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**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**
- □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

### □ **장애인복지법 개정(2017.12.1.)** 주요내용 (2019.7월 시행)

- (장애등급제 폐지) '장애 등급'이라는 용어를 '장애 정도'로 개정, 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(법 제32조)
  - \* 중증장애인(1~3급) 기준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(~'18상)
-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 욕구·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\* 실시 (법 제32조의4)
  - \* (대상사업) 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
- **(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)**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,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(법 제32조의6, 제32조의7)

# 참고 2 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개정 사례

## □ 타 법령 개정 사례
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
  - 제51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):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(2급 이상)
     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
  - "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"과 "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"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"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"
     으로 조정
    - ※ 전문개정 '19. 6.25.자

## □ 「강동구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

- 제6조 : '장애등급 2급 이상' ⇒ '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
- 별 표 : '장애등급 1~2급' ⇒ '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

'장애등급 3~6급' ⇒ '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'

## □ 「부산광역시 매점·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」

별 표 : '장애등급 1~2급' ⇒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
 '장애등급 3~4급' ⇒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'

	현 행						개	정	안		
[별표	[별표]					별丑	<u>:</u> ]				
_	우선 계약 대상자	간의 우	선순위(제5조 관	<u>련)</u>			우선 계약 대상자	간의			<u>련)</u>
순위	장애인	65세 현 이상 노인 7	국 가 유 공 한부 자·독립유 모 공자와 그 가족 유족 또는 가족	북한 이탈 주민		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학부 모 고 가족 가족 가족	가 유 공 독립유 -와 그 : 또는	북한 이탈민
1	장애등급 1~2급 으로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」제7조제 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					1	장애의 정도가 <u>심한 장애인</u>				
2	장애등급 3~4급 으로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」제7조제 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·의 료급여 수급자 또 는 비과세대상자		(생 략)			2	장애의 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 인		(현행괴	구 같음)	
3	장애등급 5~6급 으로「국민기초생 활 보장법」제7조제 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					3	<u>&lt;삭 제&gt;</u>				

# □ 「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(생 략)	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「장애인복지법</u>	② 장애정도가
시행규칙」 제2조 관련 별표 1의	심한 장애인
<u>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</u> 은 보호자	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	
속의 배우자에 한한다)에게 그 운영을	
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	
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	
받아야 한다.	

[별표]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[별표]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(제5조 관련)

순위	장매인	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1~2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  1. <u>장애등급(1-2급)</u> (이하 생략)
2	<u>장애등급이</u> <u>3~6급</u> 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(생 랖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  1. 장애등급(3-6급) (이하 생략)
3	<u>장애등급이</u> <u>1~6급</u> 으로 미과세대상자		· <u>장애등급(1-6급)</u> 미과세대상자 (이하 생략)
4		(생	<u>락</u> )
	I.V	(생 랲	)

우선순위(제5조 관련)

순위	장 에 인		북한이탈주민
1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, 아래 각 효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(이하 생략)
2	장애정도가 실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	(현행과 감음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 살하지 않은 장애인 (이하 생략)
3	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		· 등록장에인으로 미과세대상자 (이하 생략)
4		(현행과	길음)
- 0	L	(현행과 같	음)

## □ 「용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조례」

- 제6조 : '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' ⇒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
- 별 표 : '장애인등급 1~2급' ⇒ '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' '장애인등급 3~4급' ⇒ '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'
  - ※ 별표 내 3순위는 삭제(장애인등급 5~6급으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)